

'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사항 안내

□ '25년 주요 개편사항 요약

제도	현행	개선	시행
대체인력 지원금	월 80만원 (출산휴가+육아기 단축)	월 120만원 (육아휴직, 파견사용 추가)	'25.1.1.
업무분담 지원금	월 20만원 (육아기 단축)	월 20만원 (육아휴직 추가)	
남성육휴 인센티브	-	월 10만원 (남성육휴 허용 1~3사례)	'25.1.1.

①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(육아휴직, 파견) 및 단가 인상[+40만원]

- (개요)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, 대체인력을 파견을 통해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, 장려금 수준 인상(월80→120만원)
- (지원대상)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(추가)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30일 이상 계속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(지원금액) 대체인력 1명당 월 120만원(인수인계기간 동일)
- (지원기간)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기간
*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지원대상에 포함
- (지원요건) ①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② 대체인력을 30일이상 계속고용하거나 사용(파견)한 경우, ③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, ④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
* 사업주가 부담한 인건비(임금,파견근로대가)에 80%를 한도로 지원(상한액 월 120만원)

○ **개편사항 적용시점**

- 육아휴직(파견) 대체인력지원: 시행일('25.1.1.)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
- 단가인상: 시행일('25.1.1.)이후의 대체인력 고용기간에 대해 적용
 - * '25.1.1.이전 고용된 출산휴가, 육아기 단축의 대체인력도 '25.1.1.이후의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단가 증액 지원

② 업무분담 지원 대상 확대 * 육아휴직 사유 추가 지원

- (개요)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기존 육아기 단축에 적용하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
- (지원대상) 육아휴직(추가),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(지원요건)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②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(업무분담 수당 등)을 지급한,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한도의 장려금 지원
- (지원금액) 육아휴직 등 근로자 1인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
 - * 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 사용 근로자 1명당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, 합산 지원 상한액은 월 20만원임
- (적용시점) 시행일('25.1.1.)이후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,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
 - * 시행일('25.1.1.)전부터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, 분담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사업주의 경우, 시행일 이후 업무분담자를 다시 명시적 지정(기존 분담 근로자 가능)하고, 분담수당 지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'25.1.1이후 기간에 대해 분담지원금 지원 가능

③ 남성 육아휴직 지원 인센티브 신설 * 남성 휴직 10만원 추가지원

- (개요)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여건 개선
 - * (유사사례) 육아기단축지원금 인센티브(세 번째 사례까지, 증액 10만원)
- (지원대상)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
- (지원요건) 사업장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번째부터 세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지원
- (지원금액) 인센티브 월 10만원 (기존 지원금 30만원 + 인센티브 10만원)
- (적용시점) 시행일('25.1.1.)이후 남성 육아휴직 허용기간에 대해 지원

④ 기타 사항

- '25.1.1. 신설·시행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,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,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,
 - '25년 1분기분('25.1.1.~'25.3.31.) 장려금을 '25.4.1.부터 신청(접수)
- 대체인력지원금 단가인상(월 80만원→ 120만원) 및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(월 10만원 추가지원)는 '25.1.1.부터 신청·접수

□ 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(정액)

○(육아휴직 지원금)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특례* 3개월 동안 월 200만원)

* 만 12개월 이내,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, 이후 월 30만원

** '25년 개편사항: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(월 30→40만원, 10만원 추가)

○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)

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(정률)

○(대체인력지원금)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

* '25년 개편사항: 지원확대(육아휴직도 지원), 단가인상(월 80만원→120만원)

□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

○(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) 육아기 단축,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

* '25년 개편사항: 지원 대상을 육아기 단축외에 육아휴직까지 확대

< 출산·육아기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('24년→'25년) >

구분	출산전후휴가	육아휴직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단축지원금	-	월 30만원 (특례* 3개월 월 200만원) (남성 1~3번째 월 10만원 추가)	월 30만원 (1~3번째 월 40만원)
대체인력지원금 (고용+파견사용)	월 80→120만원	월 120만원 신설	월 80→120만원
동료근로자 지원	-	월 20만원 신설	월 20만원